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준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Attitudes in Korea

2008. 9

(제1저자) 박명호*

(교신저자) 심태섭**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팀장, ecpmh@kipf.re.kr, 02-2186-2258, 제1저자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tsshim@dankook.ac.kr, 031-8005-3426, 교신저자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 2월에 한국조세연구원이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설문항목중 응답자의 납세순응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와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한 납세순응태도는 “세금축소보고 인식”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의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 “세금축소보고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세금축소보고에 대하여는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성실한 세금납부를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직한 신고·납부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우선 기혼자, 근로소득자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3자의 정보제공 및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정당국은 미혼자, 젊은 연령의 납세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소득자에 대하여 납세순응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보다 많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각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다 많이 활용할 계획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납세순응, 납세의식조사, 조세회피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서론

일반기업에서 적용되던 서비스의 개념이 각종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행정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세정당국도 1990년대 말부터 국세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을 중심으로 각종 납세서비스를 개선하여 왔다. 또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 각종 제도개선, 전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다양한 세무행정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낮은 납세순응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는 매우 낮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포착률(2005년 기준)은 61.1%이며, 실체는 이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조세일보 2007.12.17). 이렇게 납세순응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납세순응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충은 물론, 본인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런데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는 각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기에,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와 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 2월에 한국조세연구원이 구조화된 설문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조사한 전화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납세순응태도를 측정한 항목과 이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와 회귀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 납세순응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정책당국이 향후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자, 젊은 연령의 납세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세정당국은 이들 집단에 대한 납세순응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보다 많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순응태도 개선방안으로, 세정당국은 각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납세자들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납세자 의식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를 파악한 후,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납세순응태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대한 기존연구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대한 조사는 한국조세연구원이나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외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2001년과 2007년에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¹⁾ 동 연구원은 2001년 12월에 전국의 30대 이상 1,045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7년 2월에는 총 1,399명을 전화설문방식으로 납세자 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하여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4,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 있다.²⁾ 미국의 경우 미국 국세청 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compliance attitudes) 및 납세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로 2007년 8월의 18세 이상 1,011명의 납세자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를 한 바 있다.³⁾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대부분의 납세의식조사는 일반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에 대한 단순한 실태파악과 인구통계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기초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2000년 8월에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하여 19개 항목, 총 34개의 질문항목으로 일반국민(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빈도분석과 각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성, 연령, 학력, 직업, 그리고 거주지) 별로 각 문항들과의 관계를 교차분석으로 통계분석하여, 세정당국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유경문 2002). 이에 따라 기존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납세의식에 대한 단순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이 납세순응도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는 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납세자에 대한 단순한 납세조사 이외에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우리나라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존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도(tax compliance)나 조세회피(tax evasion)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Jackson and Milliron(1986)은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14개의 중요한 변수를 파악하였다. 이들이 파악한 변수에는 나이, 성(姓),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득수준, 소득종류, 한계세율, 세무조

1) 조세연구원의 납세자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한국조세연구원(2002, 2007a)을 참조하시오. 중간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2007b)에 정리되어 있다.

2) 이 조사에 대한 결과는 유경문(2002)를 참조하시오.

3) 이 조사에 대한 결과는 IRS(2007)을 참조하시오.

사가능성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세법의 복잡성, 공평성, 윤리성 등 행동적인 변수도 포함되어 있다. Riahi-Belkaiu(2004)는 Jackson and Milliron(1986)에 파악된 변수를 국가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Richardson(2006)은 Riahi-Belkaiu(2004)의 연구를 확장하여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도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대한 단순한 의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미치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기존에 단순히 납세자의 의식조사에 그친 우리나라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조사와 외국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이 2007년 2월에 조사한 한국인의 납세자 의식 조사 결과와 동 연구원이 2001년 12월에 행한 납세자 의식조사 및 미국의 2007년도 납세자 의식조사와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Ⅲ.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7년 2월에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연구원에서는 2007년 2월 5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임의추출방식으로 총 2,004명의 응답자를 선정하여 전화조사를 이용하였다. 이중 최근 3년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재산보유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응답자만을 유효 응답자로 한 결과 총 1,39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구분		구성비(%)
성별	남성	44.3	결혼	기혼	91.5
	여성	55.7	여부	미혼	8.4
연령	30대	31.0	소득 수준	8천만원 이상	3.2
	40대	28.9		4천만원-8천만원 미만	16.2
	50대	22.3		1천만원-4천만원 미만	47.4
	60대	11.4		1천만원 미만	9.9
	70대 이상	5.8		소득없음	22.2
지역	대도시	51.7	근로 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48.2
	중소도시	41.7		고용주/자영업자/농림어업종사자	27.4
	읍면	6.6		기타(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23.7
학력	대학원졸 이상	3.7	직업	사무직	31.6
	대졸	42.7		자영업	23.7
	고졸	36.5		전문직/기술직	13.1
	중졸	7.5		서비스/판매직	8.5
	초등졸 이하	8.1		기타	20.2

주) 총 유효응답자 1,399명에 대한 것임

우선,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었으며, ‘경기’가 25.7%로 가장 많고, ‘서울’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⁴⁾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지역을 분류해본 결과, ‘대도시’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였다. 유효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약간 많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47.4세로 나타났으며,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그리고 50대 순이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혼자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1천만원-4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47.4%)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근로형태의 조사결과, ‘상용/임시/일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23.7%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3.7%)’, ‘전문직/기술직(13.1%)’, ‘서비스/판매직(8.5%)’순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수를 가진 응답자에 대한 납세의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IV.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다. 우선 이 절에서는 납세순응태도와 관련된 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을 정리한 후, 다음 절에서 이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납세순응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납세순응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측정한 항목중 7가지 변수를 선택하였다.⁵⁾ 그 구체적인 항목과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구체적인 설문내용과 측정방법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

<표 2> 납세순응도의 설문항목과 측정방법

설문항목	측정방법
Q3.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기꺼이 낸다
	2-어쩔수 없이 낸다
	3-빼앗기는 기분이다
Q5.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본받을 만한 행동이다
	2-당연하다
	3-손해보는 일이다
Q7.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	1-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다

4)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경기(25.7%), 서울(22.4%), 부산(7.1%), 경남(6.6%), 인천(5.6%), 대구(4.8%), 충남(4.2%), 전북(3.9%), 경북(3.7%), 대전(3.4%), 전남(2.7%), 광주(2.6%), 강원(2.5%), 충북(2.2%), 제주(1.2%), 울산(1.1%) 순으로 분포되어있다.

5) 본 연구의 자료원인 2007년 2월의 한국조세연구원의 설문지는 총 18개의 항목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변수중 “납세순응도”를 측정한 항목과 관련된 항목을 연구자들의 선택하였다.

떻게 생각하십니까?	2-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
	3-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Q9. 소득세를 축소보고 한다면 얼마만큼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1-전혀 용인 못함
	2-조금씩 축소하는 것은 용인
	3-많이 축소하는 것도 용인
Q10. 축소보고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완전히 동의
	3-보통
	5-완전히 반대
Q11. 축소 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완전히 동의
	3-보통
	5-완전히 반대
Q12. 세금 중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1-완전히 동의
	3-보통
	5-완전히 반대

주) 설문항목난은 실제 설문지에서 사용된 설문번호와 설문내용이며, 측정방법난의 내용은 실제 설문지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임(부록의 설문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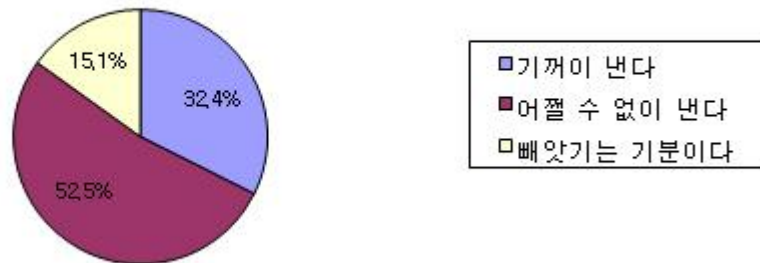
이상의 7가지 납세순응도 측정항목의 각 항목별 기술적 통계량과 각 응답자별 응답성향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에 대한 순응도(설문항목 Q3)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꺼이 낸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32.4%, “어쩔 수 없이 낸다”는 52.5%, “빼앗기는 기분이다”는 15.1%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2001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꺼이 세금을 낸 납세자의 비율은 최근에 오히려 약 3%p 감소하였고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 납세자의 비율은 약 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는 기꺼이 세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1> 납세에 대한 순응도 결과

6) 2001년 조사의 경우 세금을 기꺼이 내는 납세자의 비율이 34.9%, 어쩔 수 없이 내는 납세자의 비율은 44.8%, 빼앗기는 기분으로 내는 납세자의 비율은 20.3%였다.



남세에 대한 순응도의 응답자 인구통계적 변수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남세에 대한 순응도

구 분		응답자수	응답결과(%)			차이분석	
			기꺼이 낸다	어쩔수 없이 낸다	빼앗기는 기분이다	t값 혹은 F값	P값
전 체		(1399)	32.4	52.5	15.1	-	-
성별	남성	(620)	32.6	52.1	15.3	0.14	0.8865
	여성	(779)	32.2	52.9	14.9		
연령	30-39세	(438)	25.1	55.9	18.9	9.06***	<.0001
	40-49세	(404)	30.2	53.7	16.1		
	50-59세	(313)	34.5	53.0	12.5		
	60-69세	(163)	49.1	41.7	9.2		
	70세 이상	(81)	40.7	48.1	11.1		
학력	중졸 이하	(219)	45.2	44.3	10.5	13.49***	<.0001
	고졸	(510)	33.1	56.1	10.8		
	대졸 이상	(650)	26.6	53.2	20.2		
근로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675)	26.4	56.2	17.5	10.78***	<.0001
	고용주/자영업자/농림어업종사자	(384)	37.2	50.5	12.2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331)	38.7	47.4	13.9		
연평균 소득	1천만원 미만	(138)	32.6	52.2	15.2	2.23	0.0634
	1천만원-4천만원 미만	(663)	30.8	53.7	15.5		
	4천만원-8천만원 미만	(226)	28.8	54.9	16.4		
	8천만원 이상	(45)	24.4	60.0	15.6		
	소득 없음	(311)	38.6	47.6	13.8		

주1) 차이분석은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기꺼이 낸다)과 부정적 응답(어쩔 수 없이 낸다, 빼앗기

는 기분이다)을 비교한 것임
주2) ***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임

이러한 응답결과를 인구통계적 변수인 성별, 연령별, 학력별, 근로형태별 그리고 연평균소득별로 응답자집단을 나누어, 응답자 집단간에 응답의 차이가 있는 가를 t-검정이나 F-검정으로 알아보았다. 우선,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납세에 대한 순응도’의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이나, 학력에 따라서는 ‘납세에 대한 순응도’의 차이가 유의적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른 소득자에 비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기꺼이 낸다’나 ‘빼앗기는 기분이다’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원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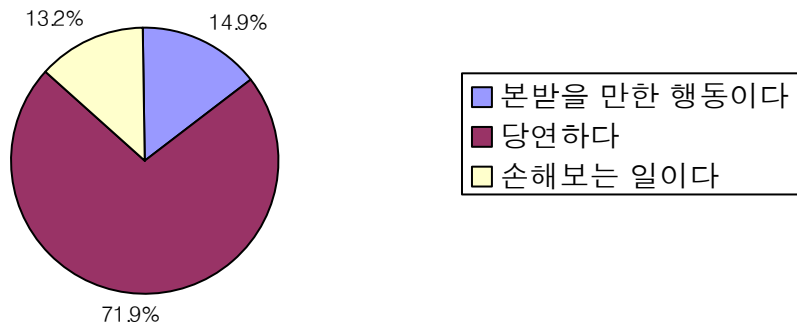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을 기꺼이 내는 자발적인 납세순응 의사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낸다’는 비율도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다.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다’는 비율은 중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소득계층별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세금납부에 있어서의 정직성(honesty)(설문항목 Q5)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 사회의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하나의 척도가 된다. 이에 “본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86.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즉 응답자의 71.9%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며,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4.9%에 달했다. 이에 비하여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약 1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최근 들어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⁷⁾

<그림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생각

7) 2001년도 조사에서는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이고,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비율은 10.7%여서 약 80.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손해보는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에 달하였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 분		응답자수	응답결과(%)			차이분석	
			본받을만하다	당연하다	손해보는 일이다	t값 F값	P값
전 체		(1399)	14.9	71.9	13.2	-	-
성별	남성	(620)	15.8	74.4	9.8	3.36***	0.0008
	여성	(779)	14.3	70.0	15.8		
연령	30-39세	(438)	15.3	69.4	15.3	2.10*	0.0780
	40-49세	(404)	16.3	72.0	11.6		
	50-59세	(313)	15.7	69.0	15.3		
	60-69세	(163)	13.5	76.1	10.4		
	70세 이상	(81)	6.2	87.7	6.2		
학력	중졸 이하	(219)	8.7	80.4	11.0	0.75	0.4715
	고졸	(510)	13.9	73.1	12.9		
	대졸 이상	(650)	17.7	68.2	14.2		
근로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675)	16.2	71.6	12.3	4.28**	0.0140
	고용주/자영업자/농림어업종사자	(384)	15.4	74.2	10.4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331)	12.1	70.4	17.5		
연평균 소득	1천만원 미만	(138)	18.1	71.7	10.1	2.28*	0.0592
	1천만원-4천만원 미만	(663)	14.2	74.2	11.6		
	4천만원-8천만원 미만	(226)	20.4	66.8	12.8		
	8천만원 이상 소득 없음	(45)	8.9	75.6	15.6		
	소득 없음	(311)	11.6	70.4	18.0		

주1) 차이분석은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본받을 만하다, 당연하다)과 부정적 응답(손해보는 일이다)을 비교한 것임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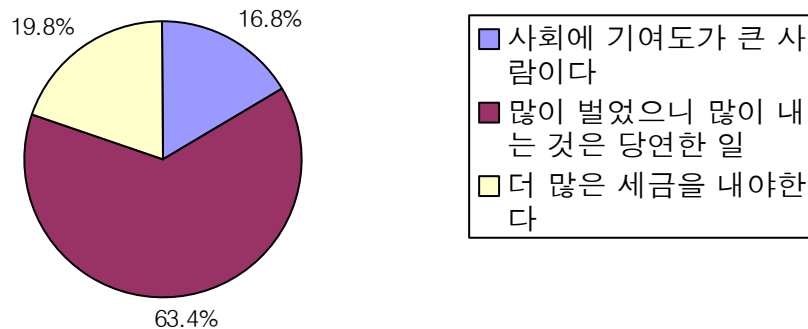
분석결과 발견된 사항은 첫째,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두 번째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소득이 있는 경우들보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손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다.

3. 납세기여에 대한 인정(credit of contribution)(설문항목 Q7)

부(wealth)를 축적하는 과정이나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다면 고액납세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정도가 아직 낮아 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국민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16.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 소득자가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도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19.8%)보다 3.0%p 정도 낮은 것이다. 응답자의 63.4%는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2001년 조사결과보다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1%p 감소하였으며, ‘고액 소득자가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도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6.0%p 줄어든 결과이다.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p 증가하였다.⁸⁾ 따라서 최근 고액납세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고액 납세자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응답을 인구통계적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구 분		응답자수	응답결과(%)			차이분석	
			사회에 기여도가 큰사람임	당연한 일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함	t값 혹은 F값	P값
전 체		(1399)	16.8	63.4	19.8	-	-
성별	남성	(620)	16.6	62.6	20.8	-0.16	0.8691
	여성	(779)	16.9	64.1	19.0		
연령	30-39세	(438)	16.9	63.5	19.6	0.70	0.5933
	40-49세	(404)	18.3	59.7	22.0		
	50-59세	(313)	16.9	64.5	18.5		
	60-69세	(163)	15.3	68.1	16.6		
	70세 이상	(81)	11.1	67.9	21.0		
학력	중졸 이하	(219)	7.8	74.4	17.8	11.93***	<.0001
	고졸	(510)	15.1	64.5	20.4		
	대졸 이상	(650)	21.4	58.3	20.3		
근로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675)	16.7	62.1	21.2	0.86	0.4213
	고용주/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384)	18.5	60.9	20.6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331)	14.8	69.5	15.7		
연평균 소득	1천만원 미만	(138)	9.4	61.6	29.0	8.58***	<.0001
	1천만원-4천만원 미만	(663)	14.8	63.2	22.0		
	4천만원-8천만원 미만	(226)	25.2	58.0	16.8		
	8천만원 이상	(45)	37.8	53.3	8.9		
	소득없음	(311)	15.1	69.5	15.4		

주1) 차이분석은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다)과 부정적 응답(당연한 일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을 비교한 것임

주2)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임

8) 2001년도 조사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9%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도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이었으며, “당연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2%이었다.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학력과 소득에 따라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은 수록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별, 연령 그리고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세금 축소보고에 대한 용인 정도(설문항목 Q9)

“세금을 축소보고하는 것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6>에 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납세자의 경우 55.2%가 ‘전혀 용인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43.2%는 ‘조금씩 축소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극히 적은 1.6%의 응답자가 ‘많이 축소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인구통계적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세금의 축소보고에 대한 국민들의 용인정도

구 분		응답자수	응답결과(%)			차이분석	
			전혀 용인못함	조금씩 축소하는것은 용인	많이축소 하는 것도 용인	t값 F값	P값
전 체		(1399)	55.2	43.2	1.6	-	-
성별	남성	(620)	56.9	41.1	1.9	0.94	0.3490
	여성	(779)	54.4	44.3	1.3		
연령	30-39세	(438)	51.1	47.0	1.8	3.17**	0.0132
	40-49세	(404)	53.7	44.8	1.5		
	50-59세	(313)	56.9	41.5	1.6		
	60-69세	(163)	65.0	34.4	0.6		
	70세이상	(81)	64.2	33.3	2.5		
학력	중졸 이하	(219)	58.9	40.2	0.9	0.98	0.3754
	고졸	(510)	53.3	45.7	1.0		
	대졸 이상	(650)	55.5	42.2	2.3		
근로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675)	59.3	39.3	1.5	7.43***	0.0006
	고용주/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384)	47.4	51.0	1.6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331)	57.7	40.5	1.8		
연평균 소득	1천만원미만	(138)	62.3	36.2	1.4	2.18*	0.0690
	1천만원-4천만원 미만	(663)	54.8	44.0	1.2		
	4천만원-8천만원 미만	(226)	54.0	44.2	1.8		
	8천만원 이상	(45)	40.0	55.6	4.4		
	소득없음	(311)	58.8	39.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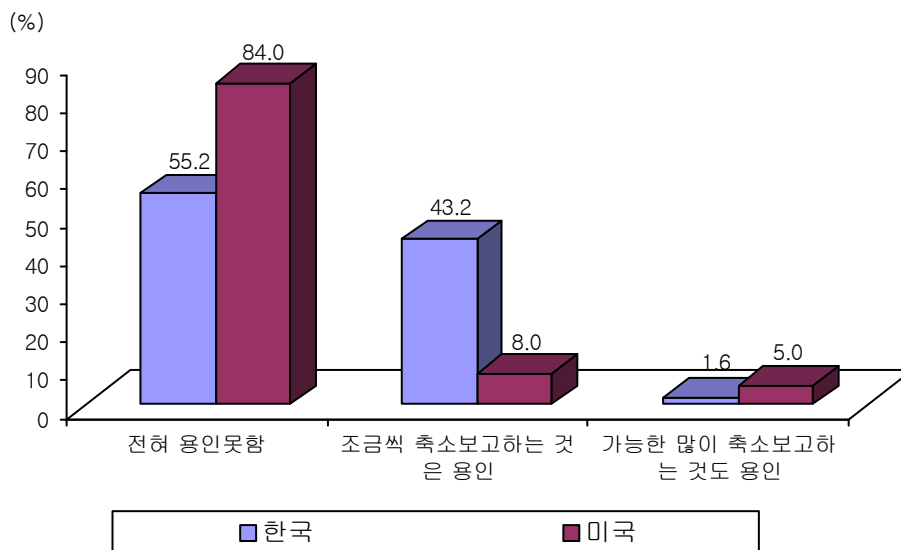
주1) 차이분석은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전혀 용인못함)과 부정적 응답(조금씩 축소보고하는 것은

용인, 많이 축소하는 것도 용인)을 비교한 것임
 주2) *와 ***는 유의수준 10%와 1%에서 각각 유의적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면 성별과 학력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전혀 용인하지 못함”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자영업을 포함한 사업자들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조금씩 축소하는 것은 용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사업소득자들이 세금 축소보고에 대하여는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소득에 따라 응답양상이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축소보고에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응답과 미국에서의 조사와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전혀 용인못함’에 응답한 응답자는 미국이 상당히 많으며, ‘조금씩 축소보고하는 것은 용인한다’는 응답은 우리나라가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탈세가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세금의 축소보고에 대한 국민들의 용인정도(미국과 비교)



주) 미국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닌 것은 무응답 때문임

자료) 한국: 한국조세연구원 (2007a), 미국: IRS (2007)

5. 축소보고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태도(설문항목 Q10)

"세금을 축소 보고한 모든 사람에게 축소보고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납세자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세금 축소보고자에 대한 처벌 및 책임에 대한 생각

구 분		응답자수	응답결과(%)					차이분석	
			완전히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완전히 반대	t값 혹은 F값	P값
전 체		(1399)	20.9	49.3	21.1	8.4	0.3	-	-
성별	남성	(620)	21.3	48.7	20.3	9.5	0.2	-0.14	0.8881
	여성	(779)	20.5	49.8	21.7	7.6	0.4		
연령	30-39세	(438)	22.4	48.9	22.4	5.7	0.7	0.26	0.9062
	40-49세	(404)	19.8	50.7	18.8	10.4	0.3		
	50-59세	(313)	22.0	48.2	20.5	9.3	-		
	60-69세	(163)	20.9	46.6	23.3	9.2	-		
	70세이상	(81)	13.6	54.3	23.5	8.6	-		
학력	중졸 이하	(219)	18.7	50.2	24.7	6.4	-	0.66	0.5181
	고졸	(510)	17.8	51.0	21.2	10.0	-		
	대졸 이상	(650)	23.7	48.0	20.0	7.7	0.6		
근로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675)	22.8	51.9	17.8	7.0	0.6	8.82***	0.0002
	고용주/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384)	14.6	47.9	26.4	11.5	-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331)	24.5	46.5	21.2	7.9	-		
연평균 소득	1천만원미만	(138)	12.3	52.2	23.9	11.6	-	0.73	0.5748
	1천만원-4천만원 미만	(663)	21.9	49.0	20.4	8.3	0.5		
	4천만원-8천만원 미만	(226)	20.4	49.1	22.6	7.5	0.4		
	8천만원 이상	(45)	11.1	62.2	15.6	11.1	-		
	소득없음	(311)	24.8	47.0	20.3	8.0	-		

주1) 차이분석은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완전히 동의, 동의)과 부정적 응답(보통, 반대, 완전히 반대)을 비교한 것임

주2)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임

응답자의 근로형태별 축소보고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축소보고자에 대한 처벌에 보다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6>의 ‘축소보고자에 대한 용인정도’의 응답경향과 유사하다. 이에 비하여 다른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세금축소 보고자는 이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설문자의 89%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긍정(동의)’의 정도는 70.2%로 나타나, 세금축소 보고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책임에 대한 긍정률은 한국과 미국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미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6. 축소보고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태도(설문항목 Q11)

“세금을 축소 보고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납세자 유형별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세금을 축소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 분		응답자수	응답결과(%)					차이분석	
			완전히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완전히 반대	t값 혹은 F값	P값
전 체		(1399)	7.5	35.6	35.5	20.4	0.9	-	-
성별	남성	(620)	6.8	38.9	31.6	21.3	1.5	1.71*	0.0867
	여성	(779)	8.1	33.0	38.6	19.8	0.5		
연령	30-39세	(438)	7.5	35.8	35.8	20.3	0.5	1.08	0.3647
	40-49세	(404)	7.4	31.7	40.0	19.6	1.5		
	50-59세	(313)	6.4	39.3	30.0	23.0	1.3		
	60-69세	(163)	10.4	35.0	34.3	20.3	-		
	70세이상	(81)	6.2	40.7	35.8	16.1	1.2		
학력	중졸 이하	(219)	6.4	41.1	34.3	17.8	0.5	2.90*	0.0551
	고졸	(510)	7.3	38.0	34.3	19.8	0.6		
	대졸 이상	(650)	8.0	31.7	37.5	21.4	1.4		
근로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675)	7.7	37.9	35.1	18.5	0.7	1.76	0.1733
	고용주/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384)	6.5	34.6	34.9	22.4	1.6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331)	8.2	32.0	36.6	22.7	0.6		
연평균 소득	1천만원미만	(138)	7.3	44.2	29.0	19.6	-	1.84	0.1189
	1천만원-4천만원 미만	(663)	7.2	36.4	37.6	17.8	1.1		
	4천만원-8천만원 미만	(226)	7.5	35.8	30.1	24.3	2.2		
	8천만원 이상	(45)	4.4	28.9	42.2	24.4	-		
	소득없음	(311)	8.0	31.5	36.3	23.8	0.3		

주1) 차이분석은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완전히 동의, 동의)과 부정적 응답(보통, 반대, 완전히 반대)을 비교한 것임

주2)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임

<표 8>의 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낮아질수록 세금 축소보고자의 신고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신고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미국의 응답자는 60% 이상이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43.1%의 긍정률보다는 상당히 높아, 세금의 축소보고자의 신고에 대한 태도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세금납부를 국민의 의무로 인식하는 정도(설문항목 Q12)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납세자 유형별 조사결과는 <표 9>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의(긍정)’정도는 80.0%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95%의 긍정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9>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에 대한 생각

구 분		응답자 수	응답결과 (%)					차이분석	
			완전히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완전히 반대	t값 혹은 F값	P값
전 체		(1399)	16.6	63.8	16.2	3.3	0.1	-	-
성별	남성	(620)	18.1	65.8	12.9	3.1	0.2	2.91***	0.0036
	여성	(779)	15.4	62.3	18.7	3.5	0.1		
연령	30-39세	(438)	14.8	63.5	17.8	3.4	0.5	1.36	0.2452
	40-49세	(404)	16.6	65.6	15.1	2.7	-		
	50-59세	(313)	16.9	61.3	17.6	4.2	-		
	60-69세	(163)	22.7	62.6	11.0	3.7	-		
	70세이상	(81)	12.4	69.1	17.3	1.2	-		
학력	중졸 이하	(219)	11.4	68.0	16.9	3.7	-	0.99	0.3709
	고졸	(510)	16.7	62.2	16.9	4.3	-		
	대졸 이상	(650)	17.9	64.2	15.2	2.5	0.3		
근로형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675)	16.3	64.6	16.3	2.7	0.2	0.11	0.8935
	고용주/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384)	15.4	64.3	16.9	3.1	0.3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331)	18.7	61.6	14.8	4.8	-		
연평균 소득	1천만원 미만	(138)	13.8	59.4	22.5	3.6	0.7	1.39	0.2336
	1천만원-4천만원 미만	(663)	16.0	65.5	16.0	2.4	0.2		
	4천만원-8천만원 미만	(226)	18.1	62.4	17.3	2.2	-		
	8천만원 이상	(45)	13.3	71.1	8.9	6.7	-		
	소득없음	(311)	18.7	62.4	13.8	5.1	-		

주1) 차이분석은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완전히 동의, 동의)과 부정적 응답(보통, 반대, 완전히 반대)을 비교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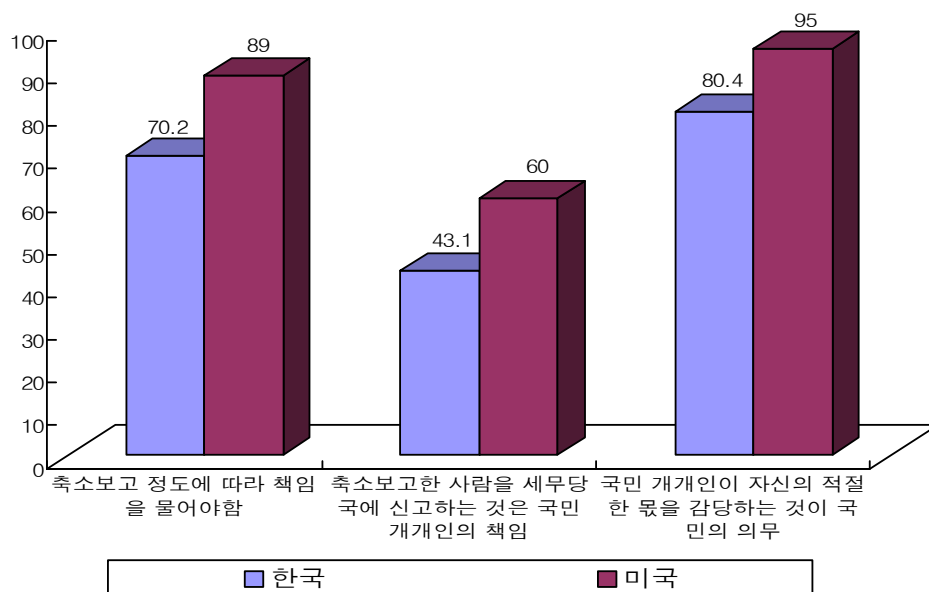
주2)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남성(83.9%)이 여성(77.7%)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금의 축소보고자에 대한 처벌 및 책임”(설문항목 Q10)에 대한 긍정률은 70.2%(<표 7> 참조), “축소보고자의 신고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설문항목 Q11)에 대한 긍정률은 43.1%(<표 8> 참조),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설문항목 Q12)라는 생각에 대한 긍정률은 80.4%(<표 9> 참조)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미국의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하여 89%, 60%, 그리고 95%의 긍정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이에 우리나라의 응답자가 각 항목별로 약 19%p, 17%p, 15%p만큼 낮은 긍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납세순응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긍정률) (미국과 비교)

(단위: %)



자료) 한국: 한국조세연구원 (2007a), 미국: IRS (2007)

V.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확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납세순응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파악된다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무당국은 향후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종속변수인 납세순응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먼저 요인 분석으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었다. 이렇게 보다 적은 수로 묶인 종속변수와 인구통계적 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간의 회귀분석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1.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독립변수)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본 연구의 독립변수(<표 10> 참조)로 하였다. 총 10개의 독립변수를 특성별로 구분하면 우선 인구통계적 변수와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로는 성별(SQ2), 연령(SQ3a), 학력(DQ1), 결혼여부(DQ2), 가족수(DQ3), 근로형태(DQ4), 소득(DQ5), 실제 조세부담률(Q2) 등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독립변수로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 변수에는 조세에 대한 이해도(Q1), 성실납세에 대한 이유(Q6, 4가지 항목)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변수가 만일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세정당국에서는 납세자의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원래 설문지에 의하여 측정된 변수를 <표 10>과 같이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 표 10 > 원래의 변수값과 더미변수(독립변수)

설문내용		설문 번호	더미변수값 (괄호 안-원래변수값, 괄호 밖-더미변수값)
< 인구통계적 변수 >			
성별		SQ2	1: 남자, 0: 여자
연령		SQ3a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5: 70대 이상
학력		DQ1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결혼여부		DQ2	1: 기혼, 0: 미혼
가족수		DQ3	
근로형태	근로자더미	DQ4	1: 근로자(1≤DQ4≤3), 0: 기타
	자영업자더미		1: 자영업자(DQ4=5 or 6 or 8), 0:기타
소득		DQ5	1: 1,000만원 미만, 2: 1,000~4,000만원 3: 4,000~8,000만원, 4: 8,000만원 이상

소득의 몇 %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조세부담률)		Q2	
<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변수 >			
각종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조세에 대한 이해도)		Q1	1: 알고 있다(Q1=1 or 2) 2: 모르고 있다. (Q=3 or 4)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각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Q6)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지킨다는 마음의 자세	Q6a	1: 동의 (Q6a=1 or 2) 0: 부정 (Q6a=3 or 4)
	우리의 이웃들은 정직하게 신고, 납부한다는 믿음	Q6b	1: 동의 (Q6b=1 or 2) 0: 부정 (Q6b=3 or 4)
	국세청에 제3자가 나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Q6c	1: 동의 (Q6c=1 or 2) 0: 부정 (Q6c=3 or 4)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Q6c	1: 동의 (Q6d=1 or 2) 0: 부정 (Q6d=3 or 4)

주) 설문번호는 원래 설문지에서 사용된 번호임(부록의 설문지 참조)

2.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종속변수)의 축소: 요인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납세순응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표 2>에 속한 7개의 변수이다. 이 7개의 변수중 동일한 속성을 갖은 변수가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설문항목에 대한 긍정률의 강도를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 설문지의 변수의 값을 변경하였다. 즉 설문항목 3번, 5번, 7번의 경우는 1은 3으로, 3은 1로 변환하고, 9번, 10번, 11번과 12번은 1은 5, 2는 4, 4는 2, 5는 1로 변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우선 본 연구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가를 알기 위하여 Barlette의 구형성 검정(근사카이제곱값=697.042, $p=0.000$)과 Kaiser-Meyer-Oklín의 표본적합도(0.630)를 계산한 결과, 본 연구의 자료는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7개의 변수를 주성분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를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7개의 변수가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 7개의 요인을 배리맥스방법(varimax)에 의한 직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였다. 표본의 수가 350개 이상인 경우 유의적인 요인적재값으로 0.30가 선택 기준으로 제시되어(Hair et al. 2006, 128), 이러한 기준으로 각 요인에 속한 변수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Q12의 경우는 두 개의 요인에서 0.30보다 큰 적재값을 보였다. 그리고 Q7의 경우도 공통분산치(commuallity)의 값이 적었다. 이것은 추출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산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이용준 1996, 95)한다. 그리고 직각회전 결과 추출된 2개의 요인은 총분산의 44.31%만을 설명하고 있어, 총분산의 60%이상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Hair et al. 2006, 122)에 훨씬 미달한다. 이에 Q7과 Q12의 두 변수를 요인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변수만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한 후, 각 변수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표 11>과 같다.

<표 11> 회전후 각 변수의 요인적재값

항 목	요 인		공통분산치 (commuality)
	1	2	
Q3.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3450	.73350	.59302
Q5.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390	.74961	.59951
Q9. 소득세를 축소보고한다면 얼마만큼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68685	-.10540	.48287
Q10. 축소보고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0423	-.21260	.69199
Q11. 축소 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9142	-.10700	.48951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1.689	1.168	
총분산에 대한 상대비율(%)	33.78	23.36	
총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33.78	57.14	

요인분석결과 총분산의 57.14%를 설명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준인 60%엔 근접하는 설명력을 보여, 이 요인분석결과자료를 추후 분석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각 요인의 명칭

<표 11>의 요인분석결과 파악된 두 요인중에서 첫 번째 요인은 주로 세금을 축소보고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이기에, 이 요인의 명칭을 “세금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주로 세금을 납부할 때의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것이기에, 이 요인은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으로 이름 부쳤다.

3.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확인: 회귀분석

앞에 언급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으로 종속변수인 납세준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였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표 11>의 각 요인의 요인점수이며, 독립변수는 <표 10>에 언급된 각 변수의 더미변수이다.

그런데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잔차에 대한 white test 결과, 요인 2의 경우에는 오차항들이 등분산의 성격을 만족하지 않기에(즉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에 의한 예측과 더불어 가중회귀모형에 의한 회귀분석(Weighted Least Square: WLS)을 실시하였다. 이에 요인 1에 대하여는 OLS에 의한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며, 요인 2에 대하여는 WLS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를 이용하여 결과해석을 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 요인		세금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요인 1)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요인 2)
상수항		-0.2874	-1.3818*
< 인구통계적 변수 >			
성별(SQ2)		0.0166	-0.0247
연령(SQ3)		0.0415	0.2123***
학력(DQ1)		-0.0135	-0.0859
결혼여부(DQ2)		0.1030	0.7182***
가족수(DQ3)		-0.0187	-0.0384
근로형태 (DQ4)	① 근로자	0.3481***	0.7228***
	② 자영업자	-0.0398	0.6184***
소득(DQ5)		-0.0916*	-0.1042*
실제 조세부담감(Q2)		0.0014	0.0043
<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변수 >			
조세에 대한 이해도(Q1)		-0.0206	-0.0264
성실 납세의 이유 (Q6)	① 국민의 의무	0.2058**	-0.0296
	② 이웃의 성실납세	0.0758	0.0865
	③ 제3자의 정보제공	0.0276	0.2770***
	④ 세무조사두려움	-0.1316*	0.2354***
F 값		3.62***	9.36***
R ²		0.0409	0.1813
Adj-R ²		0.0296	0.1619

주 1) 독립변수의 괄호안은 실제 설문지의 설문번호임(부록의 설문지 참조)

2)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2>의 회귀분석 결과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았다.

가. 요인 1(세금의 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1은 “세금의 축소보고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OLS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변수가 세금축소보고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수중 응답자의 ‘근로형태’가 세금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근로형태에 따라 표본을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 및 무급종사자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무직 및 무급종사자집단보다 근로자 집단은 “세금 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집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집단의 경우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다음으로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수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성실납세에 대한 평가(Q6)’에 대한 응답에 따라 세금축소보고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직한 신고·납부한다고 동의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세금축소보고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정직한 신고·납부에 영향을 준다고 동의한 응답자가 비동의한 응답자보다 “세금축소보고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성실한 세금납부를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직한 신고·납부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대하여 “세금축소보고 인식”을 줄이려는 노력을 세정당국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social norm)을 형성하는 노력도 납세자의 세금축소보고 인식을 줄이는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나. 요인 2(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요인 2는 응답자가 “세금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이 요인에 대한 WLS에 의한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수중에서 결혼여부, 연령은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의 경우가 미혼자보다 세금납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형태’에 따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에 따라 표본을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 및 무급종사자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자 집단 및 자영업자 집단이 무직 및 무급종사자집단보다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세정당국에서는 미혼자, 젊은 연령의 납세자,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보다 고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변수중 ‘제3자의 정보제공’ 및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정당국은 납세자를 상대로 세정당국

에서 각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 2월에 한국조세연구원이 구조화된 설문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조사한 전화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납세순응태도를 측정항목과 이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납세순응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와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한 납세순응태도는 “세금축소보고 인식”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의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 “세금축소보고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다음으로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우선 성실한 세금납부를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직한 신고·납부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세금축소보고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혼자와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변수중 제3자의 정보제공 및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정당국은 미혼자, 젊은 연령의 납세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소득자에 대하여 납세순응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보다 많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납세순응태도 개선방법으로 세정당국은 납세자를 상대로 세정당국에서 각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

식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의 납세준응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항목은 완벽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에 의하여 보다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유경문. 2002. “납세자의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 139-188.
- 이용준. 1996. 「SPSS/PC+ 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도서출판 석정.
- 조세일보. 2007.12.17. “자영업자 100원 벌면 61원만 신고”.
- 한국조세연구원. 2002.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방향」.
- _____. 2007a. 「납세자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 _____. 2007b.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재정포럼 제129호 : 43-73.
- Hair, J. F. J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earson Education International, Inc.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Oversight Board. 2007. *IRS Oversight Board Annual Taxpayer Attitude Survey*.
-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 125-165.
- Riahi-Belkaiou, A. 2004. Relationship between tax compliance internationally and selected determinants of tax mor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3 : 135-143.
- Richardson, G. 2006. Determinants of tax evas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 : 150-169.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Attitudes in Korea

Myung-Ho Park* · Tae-Sup Shim**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Korean taxpayers' compliance attitude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improve Korean taxpayers' compliance r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For these purposes, we use a taxpayer attitud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Public Finance Institution(KIPF) in February 2007. We run multiple regressions of the respondents' compliance attitudes on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ir perceptions of tax system and its administration, which were expected to have impacts on taxpayers' compliance attitudes.

In this paper, we use as a proxy of taxpayers' compliance attitudes two separate variables, "perception of the underreporting of tax liability" and "perception of honest tax payments". Firstly,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 in which we use the former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pondents who pay taxes honestly due to fears of an audit and high income taxpayers have more tendency to consider the underreporting of tax liability as an acceptable behavior. However, the respondents who regard an honest tax return as a national obligation are more likely to disapprove of underreporting.

Secondly, the regression result using the latter as a dependent variable, shows that the respondents who are married, more aged and wage earners have a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honest tax payment" than each corresponding respondents. In additi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honest tax payment" is likely to be higher for the respondents who think that people pay taxes honestly due to fears of an audit or the third parties' reporting system. But the level of "perception of honest tax payment" is likely to be lower for low income taxpayers.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tax authority should try to improve tax compliance rates of unmarried, young and high income taxpayers groups. In particular, the tax authority need to make full use of the objective data such as the third parties' reporting data and also strengthen tax audits for dishonest taxpayers. In addition, the tax authority need to develop social perception such that paying taxes honestly is a national obligation.

<Key words> Tax Compliance, Taxpayer Attitude Survey, Tax Avoidance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부록: 설문지9)

< 종속변수 : 납세준용태도 >

Q3) (납세 준용도 1) ○○님은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 기꺼이 낸다
2. 어쩔 수 없이 낸다
3. 빼앗기는 기분이다

Q5) (성실납세에 대한 평가) ○○님은 본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본받을 만한 행동이다
2. 당연하다
3. 손해보는 일이다

Q7) (고액납세자에 대한 평가) ○○님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다
2.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고액 소득자가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도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Q9) (세금의 축소보고에 대한 국민들의 용인 정도)

○○님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축소 보고한다면 얼마만큼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1. 전혀 용인 못함
2. 조금씩 축소 보고하는 것은 용인함
3. 상당히 많이 축소 보고하는 것도 용인함

Q10) (납세준용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님은 세금을 축소 보고한 모든 사람에게 축소보고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완전히 동의
2. 동의
3. 보통
- 4 반대
5. 완전히 반대

Q11) (납세준용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님은 세금을 축소 보고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완전히 동의
2. 동의
3. 보통
- 4 반대
5. 완전히 반대

Q12) (납세준용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님은 국가가 거두는 세금 중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실제 사용된 설문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만 정리하였다.

1. 완전히 동의 2. 동의 3. 보통 4 반대 5. 완전히 반대

< 독립변수 >

- 인구통계적 변수

SQ2) 성별 : 1. 남자 2. 여자

SQ3) 실례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만30세 이상만
면접

1. 30~34세 2. 35~39세 3. 40~44세 4. 45~49세
5. 50~54세 6. 55~59세 7. 60~64세 8. 65~69세 9. 70세 이상

DQ1)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1. 초등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졸 이상

DQ2) ○○님은 결혼하셨습니다? 1. 예 2. 아니오

DQ3) ○○님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모두 포함)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DQ4) ○○님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
5. 고용주 6. 자영업자 7. 무직 8. 농림어업종사자

DQ5) ○○님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얼마입니까?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수령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1. 1,000만원 미만 2.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3.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4. 8,000만원 이상

Q2) (조세부담감) ○○님은 소득의 몇 %를 소득세(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제외)로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0%로 체크바랍니다. (%)

-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변수

Q1) (조세에 대한 이해도) ○○님은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Q6) (성실납세에 대한 평가) ○○님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요인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칩니까? (매우 영향력이 큼, 다소 영향력 있음,

거의 영향력이 없음, 전혀 영향력 없음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영향력이 큼	다소 영향력이 있음	거의 영향력없음	전혀 없음
1)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지킨다는 마음 자세	1 -----	2 -----	3 -----	4 -----
2) 우리의 이웃들은 정직하게 신고, 납부한다는 믿음	1 -----	2 -----	3 -----	4 -----
3) 국세청에 제3자가 나의 소득에 관한 정보 (예, 임금·이자·배당)를 제공한다는 점	1 -----	2 -----	3 -----	4 -----
4)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1 -----	2 -----	3 -----	4 -----